

허위의 소문을 악의로 보도하면 명예훼손이 성립

Martin v. Wilson Publishing Co.

497 A.2d 322(로드 아일랜드주 대법원 판결. 1985. 8. 23)

사실개요

Rhode Island 주의 Shannock 에서 간행되는 지방신문 Chariho Times 는 1977 년 10 월 19 일자에 그 지방의 부호인 Martin 의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과장 해석하여 Martin 씨가 1977 년 여러 곳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Martin 이 밝은 공장을 매입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가격을 싸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하고, 다른 건물은 그가 매입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Martin 씨는 위 기사가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심인 상급법원(Superior Court)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도된 소문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실시하고 배심원들은 피고 승소의 평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Rhode Island 주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판결이유의 요지

1.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 원고에 관한 소문을 기사로 실은 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그 소문이 보도시 또는 그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신문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실시한 것은 잘못이다. 배심원들은 그 소문이 허위인지의 여부와 만일 허위라면 신문사가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가 있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에 관한 소문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공정한 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 또는 중립적 보도의 특권(privilege of neutral reportage)을 가질 수 없다.

판결이유

Weisberger 판사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실시하고 1. 「원고는 공적 인물인가」 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한 사실심 법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2. 피고들이 지어낸 것이 아닐지라도 원고를 형사범으로 비난하는 허위이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보도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이제 이 사건 논쟁의 핵심문제인 공적 인물로서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어떠한 사실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기로 한다. 미국 대법원이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 사건에서 선언하고 잇다른 사건들에서 발전시킨 원칙은 공적인물이 그에 대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대한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야기」(statement)가 현실적 악의, 즉 그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그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with reckless disregard)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New York Times 사건에서 명시되고 있는 수차에 걸쳐 반복되어 사용된 용어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이다. 이는 특히 허위의 명예훼손적 소문을 발표한 사건의 경우 중요하다. 소문은 일반적으로 익명의 작성자에 의하여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널리 퍼지게 되며, 마지막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쇄매체를 통하여 이야기 자체의, 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의 보도가 있거나, 양자를 포함한 복합적 형태로 그 이야기에 찬성하는지 부인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들은 사실심에서 원고가 방화죄를 범하였다는 소문이 있는 이상 그 보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실심 판사도 동일하게 배심원들에게 설시하였다. 근본적으로 사실심 판사는 소문이 그 보도시 또는 그 이전에 퍼져 있는 한 신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소문을 보도할 수 있음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실심 판사는 승소하려면 그러한 소문이 없었음을 입증할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당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명예훼손의 법리상 문서에 의하건 또는 구두에 의하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재 발표한 자는 이를 최초로 발표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되어 왔다. 이는 Cianci v. New York Times Publishing Co. (2d. Cir. 1980)사건, Restatement 등에 밝혀져 있다.

이 원칙은 Olingor v. American Sarings and Loan Association(D.C. Cir 1969)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되었다.

「법은 명예훼손 행위를 보고 또는 반복의 형식으로 숨기려는 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이를 반복하는 사람은 단지 특정한 근원에서 사실상 그 이야기를 하였음을 증명함에 의하여 진실이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이러한 재발표에 관한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적용된다.

언론기관은 공정한 비평, 중립적 보도와 순수한 의견의 발표에 관련된 여러가지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을 허위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들에게 제시되었어야 할 첫 문제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이다. 이 첫 문제에 대한 응답이 소문이 허위라는 것이면, 미국 대법원이 New York Times 사건에서 제시하고 Curtis Publishing Co. v. Butts(1967)사건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에 따라, 그러한 소문의 보도가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그 허위 여부를 부주의 하게 무시 하고 행하여 졌는가 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알고 있는 사실들의 과장해석과 상상에 근거를 둔 소문의

보도가 있는 경우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 즉 그 이야기가 허위임을 알거나 그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자 또는 발행인에게 그 소문이 허위라는 현실적 인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 중 누군가는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이야기가 허위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보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사실의 문제로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심 판사가 소문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문제만에 대하여 배심원의 판단을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New York Times 사건의 현실적 악의 유무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공정한 보도의 원칙이나 중립적 보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는가?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기하고 이 사건의 상황과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논의된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적어도 일부 사건들에서는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보도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에서 소문을 포함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은 명백히 보통법상의 공정한 보도의 특권과 최근의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2d. Cir 1977) 사건에서 제시된 중립적 보도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보통 법상의 공정한 보도의 특권은 어떤 개인의 명예가 공공집회와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다 할지라도 그 절차나 소송에 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다. 이 특권은 개인의 평판을 보호한다는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원칙의 가치보다 공적인 절차와 공공집회에 관한 정보의 알림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이는 *Edwards* 사건에 대한 정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보호되어야 할 공적 또는 사회적 이익은 공공집회와 공식적 절차에 관한 정보의 입수라는 공공의 이익이므로 이 특권은 보도자의 이야기의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이를 유추하여 공정한 보도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이미 존재하는 소문의 보도는 소문이 허위임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은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보도의 특권은 특정인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사법적 내지 행정적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촉진시킨다는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명예가 반대신문을 통하여 훼손된다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에게도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대응할 기회가 존재한다. 공공집회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집회에 참가하여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문의 보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문의 전파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자에게는 소문의 기초가 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소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제대로

방어기회가 주어지는 정정당당한 시합과는 다르다. 소문의 보도는 계속되는 소문의 반복을 촉진하고 특히 인쇄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그 전파가 촉진된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적 소문의 존재를 보도하는 것은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거의 부인할 수 없고, 그 결과 많은 법원들 그리고 이제는 당원도 소문에 나타난 비만을 허위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소문의 존재를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피고들은 제 3 자의 명예훼손적 발언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제 3 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거나 명예훼손적 소문이 온 사회에 퍼져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영원히 금지되는 결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보도를 허용하는 근거로 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앞서 든 Edwards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살충제 DDT 사용지지자들과 National Audubon Society 사이의 격렬한 논쟁 끝에 제기된 명예훼손소송 사건이었다. 위 협회는 사용지지자들이 위 논쟁과 관련된 자료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자료를 사용지지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일단의 과학자들을 「돈먹은 사기꾼들」 (paid liars)이라고 비난하였다. New York Times 의 기자는 그 비난내용, 과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격분한 반론을 정확히 보도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 제 2 순회법원 수석판사 Kaufman 은 위 법원의 판결에서 「National Audubon Society 와 같이 책임있고 저명한 기관이 공적 인물에 대하여 중대한 비난을 할 경우 그 비만의 정당성에 대한기자 개인의 견해와 관계없이 그러한 비난을 정확히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보도가치 있는 것은 그러한 비난이 행하여졌다는 점이다」 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결국 법원은 기자가 단지 비만의 진실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보도를 억압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원은 Edwards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단정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Edwards 사건에서 법원은 비난을 최초로 한 저명하고도 책임있는 기관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보도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소문에 있어서 그러한 성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소문은 그 개념상 익명으로 지어지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성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앞서 나온 Cianci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 제 2 순회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정한 보도의 헌법적 특권에 대한 주의깊은 제한의 필요성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이야기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그 항변의 광범위성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다. Edwards 사건에서 Kaufman 수석판사가 판시한 제한이 없다면 모든 언론매체는 적어도 공적인 관리 또는 인물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거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비난을 옹호하고 찬동하여도 절대적 면책특권을 지니게 될 것이다. 」

당원은 Cianci 사건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에 비추어 어떤 개인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이야기의 보도는 그 보도에서 특정할 수 있고 책임있는 근원을 정확하게 밝히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믿는다. 가령 Cianci 사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Edwards 사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방면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의 정확한 설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원은 소문의 경우 책임있는 근원을 밝힐 수 없으므로 공정한 보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더욱이 당원은 허위의 또는 근거없는 소문의 보도를 면책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공공의 이익을 발견할 수 없다. 사법적 내지 행정적 절차의 보도의 필요성은 소문을 대중에게 보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이점과는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소문의 보도는 보도자가 그 보도에 포함되어있는 명예훼손적 내용을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확인함에 있어서 New York Times 사건이 들고있는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